

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별도 제정·시행(시행 2022. 12. 1.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,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며,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을 반영함(안 제1조)
-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7호 ~ 제14호 신설)
-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제1호 ~ 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별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며,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제명을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에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로 변경하고,
 -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등 8개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규정함.
- 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